활동명: 개인정보보호법 스터디

진행 인원: 1

진행 형식: 각 스터디 항목 블로그 포스팅 진행 상세: 개인정보보호법 요약 및 조항 학습

### 🚐 제 30조의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 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 2항에

-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28조의 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제 28조의 2 또는 제 28조의 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한)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8조의 2 또는 제 28조의 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틀 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파기해야 한다.

<del>◆ 제 28조의 6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del>

① 제 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또는 제 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에 따라 처리된

• 제 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 1항 (정보주체에 통지 의무) <-- 단, 규제기관에 신고의무는

--> 개정법 제 64조의 2 (과징금의 부과)로 이동

💠 제 28조의 7 적용 범위

※ 적용 제외 조항

가명정보는 아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20조의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 제 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제 36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제 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 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 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제 35조의 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2024, 03, 15 시행

# 💠 제 28조의 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또는 제 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 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또는 제 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 한)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8조의 2 또는 제 28조의 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 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등 가명정보의 처 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u>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후에는 <u>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u>하여야 한다.

※ 가명 정보의 처리 기간 관련 기록의 경우 제 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고려한다.

#### 🚸 제 28조의 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 28조의 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 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u>

#### ※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에서만 결합 가능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지정
- --> 공공 혹은 민간 기관 지정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 58조의 2(적용제외)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결합 결과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 --> 결합결과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 처리
- --> 결합 전문기관 장의 승인

: 이 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디

③ 제 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 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 2항 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 28조의 2 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가명정보 처리
- : 가명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 가능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 📦 개인정보보호법 요약

- 🎍 가명정보 처리 특례
-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조문보다 우선 적용

#### 🎍 가명처리,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 처리 범위에 가명처리를 포함하여 규정함
- 🎍 가명정보 처리 목적
- 처리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등의 없이도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함
-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개인 식별 가능한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또는 파기
- 🚣 가명정보의 결합
- 지정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하여 수행해야 함

#### 🚐 제 31조의 2 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 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2.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 3. 물품과 서류 등 자료의 제출
- ②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 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
- 2. 국내대리인의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 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뽖 제 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7.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

활동명: 개인정보보호사업단 Lecture 시리즈 특강 참여

진행 인원: 1 ~ 4

진행 형식: 대면 & 비대면 특강 참여

진행 상세: X

# <개인정보보호 소학회 활동지>

			, ,
팀명	SWUPI	일시	2023 . 02 . 21
장소	온라인 ZOOM	참석 인원	1명
강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철기 팀장님	주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에 있 어서의 중요 이슈
특강 내용	타인의 고의로 인해 유, 노출되 노출된 경우를 넘어 피해 및 결 내용도 다루었다. 추가적으로 기한 내용도 등장하였는데, 주된 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한 생활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술 발달에 따른 사고에 따른 변 초반부에 언급주셨던 내용과 역 식 개선의 필요성과 정보유출 시 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다. 또는 과징금, 과태로 등을 이유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개인도 등장하였다. 개인의 경우 정 의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물론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으로 가 차원의 경우 프라이버시 라운	었을 경우 필요한 로페이지 규모 된 테인정보 유출 및 이유로는 침해 급하는 분야가 혹 추가적으로 정보 추가적으로 정보 하는 보생했을 기업이나 사고 로 피해 사실을 무각 및 과 국가, 그리고 있다고 강조하셨 로 인한 타격을 모드의 대두에 때 정부의 신뢰성이 정부의 신뢰성이 전부의 신뢰성이 전부의 전부의 신뢰성이 전부의	와 더불어 개인정보가 실수 또는 한 조치에 대해 다루었다. 단순히 등에 따라 달라지는 조치에 대한 ! 노출 현황과 사고의 원인에 대및 유출 사고가 갈수록 초 대량 모세기 발 . 주체의 인식 변화와 새로운 기한 이야기도 다루었다. 께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때 그 사고를 대하는 태도의 중 . 등 당한 기관이 대의적 이미지 음길 경우 이는 2차. 3차 피해밝히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위해 ! 기업의 피해 양상에 대한 내용아니라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에 였다. 기업의 경우 이미지 실수는 입을 수 있음을 연급하셨다. 국 나른 IT 산업 수출에 문제가 생길이 하락하며 국가 보랜드의 가치
추가적으로 스터디할 내용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하 가 스터디에서 법적으로 대량의 어떻게 대처 및 규제하면 좋을? 었다. 또 기존에 제정되어있는 보 침해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	할 수 있었다. 이 기 데이터를 다루 기 스터디해보는 개인정보와 관립 어 적용해보는 2 개인정보와 연관	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사고의  런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나는 기관 및 페이지에 대해서는 것도 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련된 법에 대해 공부하며 개인정 것도 유익할 듯 싶다. 이와 더불 된 판례 등을 살펴보며 개인정보 할 것 같다.

# <개인정보보호 소학회 활동지>

팀명	SWUPI	일시	2023 . 02 . 24		
장소	온라인 ZOOM	참석 인원	2명		
강사	여기어때컴퍼니 윤진환 실장님	주제	기업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및 주요 진로		
북강 내용	투강을 시작하며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정보가 지칭하는 대상, 정보의 형태, 정보를 통한 식별 가능성, 타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식별가능성, 정보 그 자체의 식별 가능성 등 개인정보를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의 유형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였다. 일반 개인정보, 민감 정보, 고유 식별 정보, 개인 위치 정보, 개인 신용 정보 및 보건 의료 정보 등 다양한 유형들을 접하며 평소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배출 수 있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개인정보 보호를 주관하는 부처들에 대한 설명도 진행되었는데 이전 행정 방식에서 효율성을 추구하여 많은 기관들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였다. 이 뿐만 아니라 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다루어 주셨는데,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이전 특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내용을 다루 어주셨다. 유출과 노출의 차이점에 대한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내용을 배출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체계에 대한 내용과 개인 정보 보호법의 주요 구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송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권리 보장 및 구제 등에 대한 법률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접해보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배율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스터디할 내용	이번 특강을 들으며 개인정보보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계획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공부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행 전 계획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니, 소학회원들끼리 진로 로드맵을 작성하는 진로 스터디를 진행하면 풍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회원 모두 본인의 커리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있어 동기 부여를 할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세미나 참석 활동지>

소 <del>속</del> 소학회명	SWUPI	일시	2023 . 02 . 24	
장소	제 2과학관 B114호	참석자	한아림	
강사	비바리커플리카(토스) 박정은	주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일하기	
특강 내용	본 특강은 강사님께서 어떻게 컴퓨터 보안 분야에 발을 들이시기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였다. 강사님께서는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이던 지 간에 명확한 자신만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해주셨다. 더 나아가 강사님께서 취업 준비 시 제출하셨던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보여주시며 알차고 일목요연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다. 강의의 중반에는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서의 실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였다.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로서는 정말 흥미롭게 다가왔는데,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3법 처리에 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추가적으로 강사님께서 개인정보보호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업권으로 취업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과 결정이 선행되어야한다는 말씀이 정말 인상깊었다. 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실무자로서 가장기초가 될 소양들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를 통해 유연한 사고와 법의이해가 정말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도 자칫 잘못이해하기 쉬운 분야인개인정보에 대해 개인 신물정보와 개인 정보를 직접 비교하며 각 개념에 대해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를 통해 가명정보를 포함해서 사망자 정보, 법인의 정보 등이 개인 정보로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정보, 정신적 정보, 기타 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 등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토스의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서의 업무와 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해 주셨는데,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왔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라는 직책은 나에게 그저 고객과회사 내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단순한 직책으로만 다가왔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 서비스 중간의 위험적인 변경이나 변조가 일어난 바는 없는지, 실제로 이용하는 개인정보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정합성이 제대로 검증되어있는 지,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정상적으로 업데이트했는지 정말 많은 업무를 취리하는 중요 직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스터디할 내용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해서 나중 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대 다는 생각이 들었다. 추가적으로 인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 난다. 강사님께서 강의 중	에 소학회원들고 해 공부하는 시 로 강사님께서 토 말씀해주시며 이 여러 번 강조:	+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해주셨던 나 함께 데이터 3법을 포함한 개 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을 것 같 스에서 취득한 라이선스와 보안 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기억 하신만큼 ISO 27001, ISMS-P, 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 중겠다는	